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1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왕경환	주민등록번호	641228-2233223
근무처 명칭	(주)래딕스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3669
세대주 여부	[]세대주 [O]세대원	국 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1.05.21 ~ 2021.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O]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O]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O]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O]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	성공제 항목										각종 =	노득·세액 공지	해 항목				
I.	관계 코드	성	! 명	소득 금액 기준	기 공	본 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713		<u>t</u>	보험.	료			의료	로비		교:	육비
┐이적공제및소득	내 ·외 국인	주민등	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 녀 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소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히		ի에 해당하			1	0	0	국세청 계	0		0	1,971,967	0	2,337,520	0	0	979,880	0	0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적습니다.		1	0	0	0	기타 계	0		0	0	0	0	0	0	0	0	0
액공	0 왕경환		경환)			국세청	0		0	1,971,967	0	2,337,520	0	0	979,880	0	0
세액공제명세	1 (근로자 본인)		자 본인)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신용카드등 사용액																			
		자료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사용분			소비증가분 대주교통			증가분	기부금											
			신용카드	=	직불카	느능		연금	영수증	(종급여 /- 이하자만	선만원 :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이용분 2020년 전체사용		2021년 전체사용분		
	국/	네청 계	8,7	71,193		568,1	44	14 136,480 55,000 98,50		3,500	158,850 6,76		6,760,320	9	,788,167	0				
	기	기타계 0 0 0 0		0		0	0		0	0										
	=	구세청	8,7	71,193		568,1	44		136,480		55,000		98	3,500	158,85	50	6,760,320	9	,788,167	0
	:	기타		0			0		0		0			0		0	0		0	0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 관계코드 5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1951. 12. 31.)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 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 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ı			(9곡 중 제2곡)
	구분		지	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11			미어그버청근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	연금보험료		민연금보험료		주(현)근무지	보험료	6,995,670	전액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국민여금	구보험료 외의	공전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보험료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1 도급표 기기 연금보험료	07	주(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공제	_ !!!! 0/		여금병	보험료 기		_	6,995,670		
		_			<u>"</u>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구민건강보험 당기요양보험 포함	ار (اق			0		
		(100	5/ #OTG T	D/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보험	불료 계			0		
Ш.		즈태 0	임차차입금	[내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0	작성방법 참조	
특		T -1 c	크시시 ㅂㅁ	;	거주자 차입	전니다이런다	0	100日 日土	
					15년 미만		0		
별			2011년 이전		15년~29년		0		
2			차입분		30년 이상		0		
			2012년 이호	고정금			0		
소		장기	2012년 이후 차입분	비거치	리이거나, 상환 대출		0		
	주택자금	주택	(15년 이상)		기타 대출	이 지 사람이	0	자사비내 카조	
득		저당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차입금		15년			0		
공			2015년 이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0			차입분		기타 대출		0		
- 11				10년 ~					
제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주택자금	금 공제액	ᅨ				
		「소득서	비법」 제34조제	테2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0		
		「소득서	네법」 제34조제	네3항제1	호(종교단체 기부	기부금이월액	0	지사비비 취소	
	기부금	금 제외)에 따 「소득세법」 제34조제3형					0	작성방법 참조	
	(이월분)	エコハ	71년 및 71104도 A 중 종교			기부금이월액	0		
			기부금0	월분(힙	∤계)		0		
	_		- ネ/ 00001 0	וסור גדו	\	1.101.704		납입액 40%와	
		개인연금시	더축(2000년 이 	1선 가입)	납입금액	0	72만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	제부금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청'	약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조미리크리호		근로자주	트택마련제	더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주택청'	약종합저	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IV.			주택마련저·	축 소득공	공제 계		0		
ユ			· · · ·		벤처 등		0		
		20	019년 출자·투	자분	조합1	출자ㆍ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밖					조합2		0		
11				벤처 등			0	-1.1	
οl	투자조합	2020년 출자·투기 2021년 출자·투		자분	조합1	출자 • 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의	출자 등				조합2 벤처 등		0		
				투자분	전시 등 조합1	출자 • 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소			1		조합2	' . '	0	.001 11	
			투자조합 출지	나 등 소득	특공제 계		0		
득		① 신용키				사용금액	8,771,193		
		② 직불・선	선불카드			사용금액	568,144		
공		③ 현금영		_		사용금액	136,480		
0	신용카드등		• 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55,000		
	사용액		시장사용분 교통이용분			사용금액	98,500		
제				시 사용 키		사용금액	158,850		
		-	,		r=등자동급곡 중 증가한 금액)	증가금액	2,689,831		
			계(①+②+③				12,477,998		
		우리	 사주조합 출연		-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유지중소기업 근 유지중소기업 근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 6 보기답	•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 경기	ᆸᆸᆍᄭᅙᄸᄼ	1 7			0	그 요요된 심소	

변경 등 대한	제3쪽)
사매관의 이름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급수일 제출일 고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제출일 조료일 제출일 조료일 조료의	
지역 기 연고도등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제출일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시액감비	
## 선괴공유 중소기업 경영생교급 감면 시작일 중요일 ***********************************	
지 전	
수령액 참면 시작일 중료일	
용	
변경 등 전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변경 등 보기술인공제되법 이 따른 퇴직연금 이 무리 가장보기 에 따른 퇴직연금 이 무리 가장보기 에 따른 퇴직연금 이 무리 가장보기 에 따른 되지면 보장보기 에 따른 함시 다음액 이 당시 반기시 연금계좌 계 이 무리제좌 계 이 무리제좌 계 이 무리제좌 계 이 무리제좌 계 이 무리에 무리 기본 등에 이 무리에 이 무리에 이 무리에 이 무리에 이 무리를 하는 이 되었다면 이 기본 등에 이 무리를 하는 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이 무리를 하는 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변경 등 보험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한 등	레세액
변급 계좌	
지하 변경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0 12% 12% 15% 100만원 12% 15% 100만원 15% 15% 100만원 15%	
V . 세 액 강 제	
V . 시	
V . 보험료 계 1,971,967 V . 보인・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2,337,520 작성방법 참조 20% 기 급 보인・시술비 지출액 0 참조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0 15% 15% 의료비계 2,337,520 2,337,520 2 의료비계 2,337,520 2 조득자 본인 광급(대학원 포함) 0 전액 19당 300만원 15% 사비액공제 학학전 아동 (0명) 유치원・학원비등 0 1명당 300만원 15% 15% 15% 교육비계 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15% 15% 15% 교육비계 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15% 15% 15% 교육비계 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15% 15% 15% 교육비계 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15% 15% 15% 교육비계 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15% 15% 15% 교육비계 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15% 15% 15% 15% 교육비계 기부금액 0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5% 15% 25% 15% 25% 15% 2	
V. 보험료계 1,971,967 작성방법 15% 시비 역적 전기 전상 기상 전상 전상 전통례자 기상 전상 전통례자 기상 전상 전통례자 2,337,520 작성방법 참조 20% 기상 전환 기상 전환 15% 15% 15% 15% 15% 기사 전환 기상 기	
V . 세 액	
선물	
막 감 면 및 공제대상자 지출액 0 15% 일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979,880 의료비계 2,337,520 모 기생악 전 이 전액 기명당 300만원 조·중·고등학교(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조·중·고등학교(0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기명당 300만원 전액 공제 기부금액 0 전액 기부금액 0 15%,25% 기	
감 면 및 공공 세액공제	
면 및 공 세액공제 시 액 공 제 세액공제 의료비계 2,337,520 전액 취학전 아동 (0 명) 유치원・학원비등 0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0 명) 공납금 0 1명당 300만원 조・중・조등학교(0 명) 공납금 0 1명당 900만원 장애인 (0 명) 독수교육비 0 전액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0 15%,25% 기부금 기부금액 0 15%,25% 작성방법 추조 20%	
및 공 세액공제 부	
지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제34조제2항제1호 기부금액 0 1명당 300만원 15%,25% 기부금액 0 1명당 300만원 15%,25% 기부금액 0 1명당 900만원 15%,25% 25에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0 100/110 15%,25% 20%	
지 세액공제 시액공제 시액 공 제	
세액공제 액 공 제 백 공 제 백 공 제 비 공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0 명) 공납금 0 1명당 900만원 조 전액	
지 장애인 (0 명) 특수교육비 0 전액	
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0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0 15%,25%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액 0 작성방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0 참조 20%	
성지사금 10만원 이하 기무금액 0 100/110 15%,25% 15%,2	
기 부금액 0 작성방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0 참조 20%	
기 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이 작성방법 무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0 참조 20%	
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0 참조 20%	
금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액 0 또는	
기무금 35% 35% 35% 기부금액 0	
기부금 계 0 0 mm	
국외원천소득 0	
<u>납세액(외화)</u> 0	
외국납부세액	
^{되 독립구세택}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0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0 10% 또는 12%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2022 년 01월 18일

왕경환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X) 0 2.종(전)근무지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명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X) 0 제출 (X)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 ·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X)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X),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유 의 사 항

-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 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	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그 밖의 오득용제 작성당입							
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공인 특공제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 분	한 도 액						
공제	2019년~ 2021년 출자·투자분	10%(100%,7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 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역 하계액에 해당 금액은 포함하여 계사하니다.								
· 등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합니다) 사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특공제 당공인 등공제 내용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 :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 등 적은 금액을 잘 되어 등의 10%까지 공대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잘 되어 등의 10%까지 공대에 등을 가려면 등의 10%까지 공대에 등을 자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대에 등을 가려면 이 이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생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 구 분 공제 2019년 ~ 2021년 출자・투자분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3. 공제금액: ①+(2)+③+(4)+⑤-⑥+(2) 등 등에 하면 금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1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사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를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설립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자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상공인 하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본은 30%까지 공제 뿐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제6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기세호·제6조 30%까지 공제 보기 10%(100%, 70%, 30%)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을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여 3. 공제금액: ①+(2)+③+(4)+⑤-⑥+(7)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 10% 10% 10차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① 2021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4.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3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①+②+③+⑦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각 항목별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세액공제 작성방법

al 7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외국납부공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 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 50세 이상 연 6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다만,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700만원) 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5.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탈하는 경우 그 미탈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합니다) 및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만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밥입영수증의 기부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를 반의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함인세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할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 · 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	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용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보함	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 특별 세액 공제 교육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기투	쿠금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	를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왕경환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641228-2233223					
③ 상 호	(주)래딕스플러스	④ 사업자등록번호	105-86-53669					

(2021)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왕호 당호 공당빙 코드	(2) 난임 시술비 대당 여부		
6 4 1 2 2 8 - 2 2 3 3 2 2 3 O	1	23 2,337,520 X		
	합 계	23 2,337,520		

「소득세법」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01 월 18 일

제출자

왕경환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충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급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보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급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보인부담금①' 라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왕경환	생 년 월 일	1964.12.28
근 무 처 명 칭	(주) 래딕스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3669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공제대	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1) III .	(1) 1				(5) 소 계				(9) 도서공연 등 사용분			(11)-1 소비증가분	
(1) 내 · 외국인 구분	(2) 관계	(3) 성명	(4) 생년 월일	자료 구분	((6)+(7) +(8)+(9) +(10)+(11))	(6) 신용 (7) 직불 · (8) 현 카드 선불카드등 영수		(8) 현금 영수증	(9) 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10) 전통시장 사용분	(11) 대중교통 이용분	2020년 전체 사용분	2021년 전체 사용분
내국인	소득자	아저희	·경환 1964.12. 28	국세청 자료	9,788,167	8,771,193	568,144	136,480	55,000	98,500	158,850	6,760,320	9,788,167
네크리 .	소득자 본인	성성환		그 밖의 자료	0	0	0	0	0	0	0	0	0
(5)-1 합 계 액			9,788,167	8,771,193	568,144	136,480	55,000	98,500	158,850	6,760,320	9,788,167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17	7) 공제제외금액	계산	(18) 2021년 신용카 드등사용 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105%)]×10%	
(12)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6)×15%)	(13) 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7)+(8))×30%	(14) 도서·공연등 사용분 공제금액 ((9)×30%)	· (15) 사용년 ((10	(15)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10)×40%)		중교통 당제금액 40%)	(17)-1 총급여		(17)-2 최저사용금액 [((17)-1)×25%]	(17)-3 공제제외금액		
(19) 공제가능금액 [(12)+(13)+(14)+(15 +(16)-((17)-3)+(18)	(20) 공제한도 [총급여 수준별 2) 원, 250만원, 30 과 ((17)-1)×209 적은 금액]	도액 월 200만 800만원 00% 중 금액)		(22) 전 추가 공 [(19) > (20 (19)-(20 (한도:100 적은	통시장 제금액 10인 경우에 과 (15) 만원) 중 금액]	(23) 추가 [(19) > ! (19)-(20 (한도:: 적:	대중교통 공제금액 20)인 경우에))-(22)과 (16) 100만원) 중 은 금액]	(2 ² 등 [(19) (19)- (14)	4) 도서 · 공연 추가 공제금액 > (20)인 경우에 (20)-(22)-(23)과 (한도:100만원) 5 적은 금액)	(25)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 ([19)<(20)인 경우에 (19)<(20)인 (22)-(23)- (24)과 (18) (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26) 최종 공제금액 ((21)+(22)+(23)+(24) +(25))	
(17)-3 계산												

구 분	계산식	(17)-3
(6) ≥ ((17)-2)	((17)-2) × 15%	
$(6)+(7)+(8)+(9) \ge ((17)-2) > (6)$	(6)×15% + {((17)-2) - (6)} × 30%	
((17)-2) > (6)+(7)+(8)+(9)	(6)×15% + ((7)+(8)+(9)) x 30% + {((17)-2) - (6)-(7)-(8)-(9)} × 40%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22년 01월 18일

신청인 : 왕경환 (서명 또는 인)

귀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첨부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 또는 중질지 80g/m']

작성 방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 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 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 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⑨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 ⑥ \sim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선불카드등"란, "⑨ 도서·공연등 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⑪ 대중교통이용분" 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⑩, ⑪, ⑰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다. "⑧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라. "⑪-1소비증가분" 란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전체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7. ⑧번 항목의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9. "①-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②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0. "[19] 공제기능금액" 계산시 [18번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 11. ②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30만원)입니다.
- 12. 도서·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 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